

#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3033 |
|----------|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5년 1월 일

발의자 : 정병용 의원

## 1. 제안이유

공유주차장 지원사업을 활성화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, 공유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지원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 변경(안 제8조)

- 공유주차장 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신속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
## 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## 4. 관계법령 발췌서 : 해당없음

## 5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##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공유주차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”을 “공유주차장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“예산”을 “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”으로, “지원”을 “지원하거나 사업을 직접 시행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공유를 위한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, 아스콘 포장, 시설 보수
2. 공유에 따른 옥외보안등,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
3. 공유 관련 입간판, 표지판 설치
4. 주차편의시설 보수
5. 주차관제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p>제8조(공유주차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)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정한 공유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정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② · ③ (생략)</p> | <p>제8조(공유주차장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) ① -----</p> <p>-----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---- 지원하거나 사업을 직접 시행-----</p> <p>-----.</p> <p>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공유를 위한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, 아스콘 포장, 시설 보수</li> <li>2. 공유에 따른 옥외보안등,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</li> <li>3. 공유 관련 입간판, 표지판 설치</li> <li>4. 주차편의시설 보수</li> <li>5. 주차관제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</li> <li>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li> </ol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 |